

고맙습니다. 호국영웅의 희생을 잊지 않겠습니다.



교육부

수신자 수신자참조
(경유)

제목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대상 조정 알림

1. 관련 : 질병관리청 검역정책과-2723(2022.6.23.)호

2.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대상 확대에 따른 후속조치로 **음성확인서 제출 예외대상**(격리면제서 관련) **조정**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, 각 기관에서는 **해외입국 학생 등 관련자에게 안내**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조정내용

| 구분 | 기존 | 변경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대상 (격리면제서 관련) 조정 | 인도적 목적의 격리면제서 소지자 (가족 장례식 참석 등) | 인도적 목적의 격리면제서 소지자 |
| | | (추가) 공무국외출장목적의 격리면제서 소지자 |

나. 시행일 : '22. 6. 27.(월)(한국시 기준) 입국자부터 적용

붙임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안내 국·영문 각 2부. 끝.

교육부장관



각실과, 고등교육기관전체, 고등외국교육기관전체, 소속기관, 소속단체, 시도교육청

주무관

박현식

행정사무관

홍용환

코로나19대응 전결 2022.6.23.
학교상황총괄 신광수
과장

협조자

시행 코로나19대응학교상황총괄 ((2022.6.23.)) 접수 ()
과-1797

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, 정부세종청사 13-2 / <https://www.moe.go.kr>
동 교육부 (어진동)

전화 044-203-7140 전송 044-203-7079 / root77777@korea.kr / 공개
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.